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6 선고 2020가단875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랑

담당변호사 박종훈

변론 종결 2020. 10. 16

판결 선고 2020. 11. 6

주 문

1.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"이 사건 부동산"이라 한다)의 10/127지분에 관하여
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7. 5. 15. 접수 제122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"이 사건
등기"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,피고가 2017. 4. 6.자 교환계약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2. 판단

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6779판결 등 취지 참조)살피건대,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교환계약의 대상이처음부터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원고와의 사후 합의를 통해 맹지인 교환대상 부동산들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던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,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,이 사건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조승우

별지